

휴먼라이츠워치 의견서: 대한민국 군형법 제 92 조의 6 의 폐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귀중

I. 서론

휴먼라이츠워치는 헌법재판소 2017 헌가 16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법재판소”)에 본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대한민국 군형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 92 조의 6 (이하 “제 92 조의 6”)은 “군인”¹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² 대한민국 군은 제 92 조의 6 을 적용하여 합의 여부나 장소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의 성적행위를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왔습니다.³ 제 92 조의 6 은 액면상으로 볼 때 동성이나 이성 간 항문성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에서 이성애자 군인을 상대로 이 조항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위반자를 처벌한 경우는 없는 듯 보입니다.⁴

휴먼라이츠워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군형법 제 92 조의 6 의 위헌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권, 사생활권, 노동권 등 다양한 유형의 기본 인권을 인정하며,⁵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법규들이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⁶ 휴먼라이츠워치는 헌법재판소가 2017 헌가 16 의 건을 심의할 때 (1) 국제인권법 그리고 그러한 인권법이 제 92 조의 6 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들과 (2) 군법에서 제 92 조의 6 과 유사한 조항들을 폐지한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리학은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군에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하 ‘LGBT’)로 통칭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92 조의 6 이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II. 제 92 조의 6 은 여러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¹ 군형법, 2009년 11월 2일 법률 제 9820호,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 14183호에 의해 개정, 제 1조(대한민국).

² 군형법, 2009년 11월 2일 법률 제 9820호, 2013년 4월 5일 법률 제 11734호에 의해 개정, 제 92조의 6 (대한민국).

³ Kyle Knight, *South Korea's Military 'Sodomy Law' Should Go*, HUMAN RIGHTS WATCH (May 2, 2017, 6:30AM), <https://www.hrw.org/news/2017/05/01/south-koreas-military-sodomy-law-should-go>.

⁴ 동성애 군인의 항변 “난 범죄자가 아니다”,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2017년 5월 2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95759.html>.

⁵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 10호에 의해 개정, 제 2장 제 11(1), 15, 17, 32 조.

⁶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6(1)조.

LGBT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권리는 인권 법리학에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서의 다음 섹션에서는 LGBT 인권의 동등한 보호와 관련한 국제 법규와 제 92조의 6이 어떻게 LGBT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제 92조의 6은 두 가지 측면에서 LGBT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합니다. 둘째, 성적 지향을 근거로 군인들을 차별합니다.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 하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 92조의 6에 따른 구금 등의 법집행 조치는 자의적이며, 따라서 자유권과 안전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군복무에 대한 자의적인 장벽과 파면에 대한 자의적인 사유가 생성되기 때문에 노동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제 92조의 6은 모든 군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하며, 이로써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⁷,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⁹ 등 다수의 국제 조약을 비준했으며, 그러한 국제 조약에 따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법적 의무들을 이행해왔습니다. 국제 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는 각 조약에 따라 비준국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들에 의해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구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의 비준국으로서 각 조약에 명시된 인권을 보장하고 LGBT에 대한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¹⁰ 이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세계 각국의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 및 개인에 대한 폭력 사례를 기록하고, 국제인권법을 이용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¹¹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과 2016년에 두 개의 결의안을 연속해서 통과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보고를 요청하였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⁷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에 비준함.

⁸ *Id.*

⁹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9일에 비준함.

¹⁰ Resolu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HRC/RES/17/19).

¹¹ *Id.*

(continued...)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하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며,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¹² 대한민국은 이 세 결의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또 구체적으로 제 92 조의 6 을 비판하고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유엔의 조약 기구들은 기본 인권에 반하는 제 92 조의 6 의 폐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¹³ 더 나아가,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서 몇몇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제 92 조의 6 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¹⁴ 이들 기구와 국가들은 제 92 조의 6 이 기본 인권과 배치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사생활권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인권 중 하나입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족, 가정, 서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¹⁵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비준국들은 모든 개인이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¹⁶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설령 법의 이름으로 국가가 취한 자의적인 조치라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¹⁷ 사생활에 간섭하는 법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때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¹⁸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포함합니다.¹⁹ 결과적으로 국가는 자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투넨 대 호주(Toonen v. Australia)」의 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호주 태즈마니아주 법률이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사적인 성적행위를 포함하여 “남성 간의 다양한 형태의 성적 접촉”을

¹² Resolu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HRC/RES/27/32); Resolu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HRC/RES/32/2).

¹³ 아래 참고 44-48 번과 관련 텍스트 참조.

¹⁴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덴마크는 인권 침해를 근거로 제 92 조의 6 의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A/HRC/37/11)에 대한 실무단의 보고서.

¹⁵ G.A. Res. 2200 (XXI), annex,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c. 16, 1966).

¹⁶ *Id.*

¹⁷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6, ¶¶ 1-4, U.N. Doc HRI/GEN/1/Rev.9 (Vol. I) (1988) 참고. 간섭이 “법률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각 조항과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Id.* at ¶ 3.

¹⁸ *Id.* at ¶ 4.

¹⁹ Toonen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488/1992, Hum. Rts. Comm., U.N. Doc CCPR/C/50/D/488/1992 (1994);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HRC/4/40/Add.1), at 93 (Feb. 2, 2007) (“성인 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의 존재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사생활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continued...)

범죄화함으로써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²⁰ 위원회는 사생활권이 성인의 성적인 활동을 포함한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투넨에 대한 간섭이 자의적이며 국가는 그러한 간섭에 대해 어떠한 합당한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²¹

투넨의 건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일례로, 위원회는 칠레에서 존속되고 있는 유사한 법률이 사생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²²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카메룬 정부가 “동성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법률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게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²³ 현재 위원회는 계속해서 바레인과 감비아 정부에 사생활권을 존중하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의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²⁴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제 92 조의 6 도 사생활권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 92 조의 6 은 특히 -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장된 사적인 활동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사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B. 노동권

노동권은 국제법 하에서 보장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이 2년의 의무적인 군복무를 수행하지만, 일부는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하여 노동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개인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용한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²⁵ 한국 정부는 이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권을 포함해 이 규약에 명시된 권리들이 “차별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수용하였습니다.²⁶

제 92 조의 6 은 성인 남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개인의 노동권에 중대하고, 부당하며, 불평등한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애자 남성들의 군복무에 자의적인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제 92 조의 6 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명시한 노동권의 보호에 위배됩니다.

²⁰ *Toonen*, ¶ 2.1.

²¹ *Toonen*, ¶¶ 8.2, 8.6.

²²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Chile (CCPR/C/79/Add.104), at ¶ 20 (Mar. 3, 1999).

²³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Cameroon (CCPR/C/CMR/CO/4), at ¶ 12 (Aug. 4, 2010).

²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nitial Report of Bahrain (CCPR/C/BHR/CO/1), at ¶¶ 23-24 (Nov. 15, 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Gambia in the Absence of its Second Periodic Report (CCPR/C/GMB/CO/2), at ¶¶ 11-12 (Aug. 30, 2018).

²⁵ G.A. Res. 2200 (XXI), annex,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c. 16, 1966).

²⁶ *Id.*

(continued...)

C.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9 조는 모든 개인이 “자유권과 안전권”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²⁷ 또한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²⁸ 제 92 조의 6 에 따른 협의로 군인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하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9 조에 위배됩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조사하는 유엔 기구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구금을 “자의적” 구금으로 간주합니다.²⁹ 일례로, 이집트 당국이 “동성애자로 보이는” 수십 명의 남성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사건³⁰에 대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은 그러한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결정했으며 동성애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³¹ 실무단은 또 카메룬의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카메룬에서는 당국이 동성애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따라 11 명을 구금하고 기소했습니다. 여기서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은 이러한 구금이 자의적이며 사생활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³²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³³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는 제 92 조의 6 은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한 구금은 자의적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그러한 구금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군의 대응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가 제 92 조의 6 을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³⁴

2017 년 8 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라 세 명의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가 “군형법을 근거로 동성애자로 간주되는 군인 및 군 관계자에 대해 최근 진행된 체포와 조사, 구금 및 기소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³⁵ 이 세 전문가는 “특히 동성애자로 간주되며

²⁷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pra* note 15.

²⁸ *Id.*

²⁹ See, e.g.,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CN.4/2003/8/Add.1), at 68-73 (Jan. 24, 2003).

³⁰ *Id.* at 69.

³¹ *Id.* at 73.

³²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HRC/4/40/Add.1), at 91-94 (Feb. 2, 2007).

³³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CPR/C/IRN/CO/3), at ¶ 10 (Nov. 29, 2011).

³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at ¶¶ 14-15 (Dec. 3, 2015).

³⁵ UA KOR 2/2017. 이 세 명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 부단장,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이들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2/2 와 33/30 및 34/18 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았다.

(continued...)

군형법 제 92 조의 6 에 따른 성적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군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수사 및 기소 절차가 부재한 것”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³⁶ 이 전문가들은 또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국제법, 특히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³⁷

D.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

개인이 국제조약에 명시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³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6 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기타 견해, 출신국이나 사회적 배경, 자산, 출생 시 지위나 기타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³⁹ 이것은 보편적으로는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생활권 등 다양한 인권 조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⁴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엔의 여러 인권 조약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LGBT 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들은 1990 년대 초반 이후 반복적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⁴¹

유엔의 인권 기구들은 특히 동성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인 성적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습니다.⁴²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투넨의 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성인 간의 합의에 따른

³⁶ *Id.* at 4.

³⁷ *Id.* at 5.

³⁸ 일례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비준국은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이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와 기타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배경, 자산, 출생 상의 지위나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pra* note 25.

³⁹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pra* note 15.

⁴⁰ *Id.*

⁴¹ <https://www.ohchr.org/EN/Issues/Discrimination/Pages/LGBT.aspx>.

⁴² Born Free and Equal: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2 (HR/PUB/12/06), at 31, citing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ogo (CCPR/C/TGO/CO/4), at ¶ 14; Uzbekistan (CCPR/C/UZB/CO/3), at ¶ 22; Grenada (CCPR/C/GRC/CO/1), at ¶ 21;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CPR/C/TZA/CO/4), at ¶ 22; Botswana (CCPR/C/BWA/CO/1), at ¶ 22;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CCPR/C/VCT/CO/2); Algeria (CCPR/C/DZA/CO/3), at ¶ 26; Chile (CCPR/C/CHL/CO/5), at ¶ 16; Barbados (CCPR/C/BRB/CO/3), at ¶ 13; United States of America (CCPR/C/USA/CO/3), at ¶ 9; Kenya (CCPR/C/CO/83/KEN), at ¶ 27; Egypt (CCPR/CO/76/EGY), at ¶ 19; Romania (CCPR/C/79/Add.111), at ¶ 16; Lesotho (CCPR/C/79/Add.106), at ¶ 13; Ecuador (CCPR/C/79/Add.92), at ¶ 8; Cyprus, (CCPR/C/79 Add.88), at ¶ (continued...)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태즈마니아주의 법률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함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특별보고관들과 유엔인권이사회 하의 여러 기구들은 LGBT 를 차별하는,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의 범죄화가 “편견을 정당화하며, 증오 범죄와 경찰에 의한 폭력, 고문, 가정폭력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⁴³

제 92 조의 6 은 이러한 인권 조약들이 보장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평등권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제 92 조의 6 은 남성 군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간접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며, 제 92 조의 6 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행위로 인해 군복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시 불이익이나 편견 등 부정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엔의 여러 조약 기구들은 제 92 조의 6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 조항의 폐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일례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 92 조의 6 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군형법에서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또 동성애 관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향유함에 있어서 차별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여러 공적 영역에서 LGBTI 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행위가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⁴⁴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⁴⁵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문방지위원회도 제 92 조의 6 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한 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차별 금지의 원칙은 인권 보호에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며, 본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핵심”임을 분명히

11; United States of America (A/50/40), at ¶ 287.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Kyrgyzstan (E/C.12/Add.49), at ¶¶ 17, 30; Cyprus (E/C.12/1/Add.28), at ¶ 7.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Uganda (CEDAW/C/UGA/CO/7), at ¶¶ 43-44; Kyrgyzstan (A/54/38), at ¶¶ 127, 12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e (CRC/C/CHL/CO/3), at ¶ 29.;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29/23), at ¶¶ 43-45.

⁴³ Born Free and Equal: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2 (HR/PUB/12/06), at 31, citing, for example, the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human rights defenders (E/CN.4/2002/16/Add.1), at ¶ 15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E/CN.4/1999/68), at ¶ 15. See also, report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C/CN.4/2002/76; and A/56/156, at ¶¶ 18-25.

⁴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C.12/KOR/CO/4), at ¶ 24 (Oct. 19, 2017).

⁴⁵ *Id.* at ¶ 25.

(continued...)

했습니다.⁴⁶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구체적으로 “동성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 제 92 조의 6 을 근거로 한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를 언급하면서 제 92 조의 6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⁴⁷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균형법 제 92 조의 6 의 폐지를 고려하고, 군대 내 LGBTI 에 대한 폭력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⁴⁸

III. 제 92 조의 6 의 무효화는 최근 몇 년간 유사한 법률을 폐지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 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폭력과 차별로부터 LGBT 를 보호할 의무를 인식하면서 인권 의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법에서 제 92 조의 6 과 유사한 조항 또는 기타 소도미법(sodomy law)을 폐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몇 사례로서 본 의견서의 다음 섹션에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에서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A. 미국

미국은 1951 년에 채택된 통일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의 제 125 조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애 관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1993 년에서 2011 년까지 미국은 소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이하 DADT)”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 정책은 관련 법조항의 집행을 제한하기는 했으나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⁴⁹ 이 정책 하에서 동성애자인 군인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말하거나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상관은 부하들에게 성적 지향을 물어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⁵⁰ DADT 정책은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군역량의 필수인 사기와 질서 및 규율, 단결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근거 하에 동성애자 군인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⁵¹ DADT 정책은 장소에 상관없이 군인들의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는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⁵² 2008 년까지 13,000 여 명의 군인이 이 정책에 따라 퇴출되었습니다.⁵³

⁴⁶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2, ¶ 20, U.N. Doc. CAT/C/GC/2 (2008).

⁴⁷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on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KOR/CO/3-5), at 35 (May 30, 2017).

⁴⁸ *Id.* at 36.

⁴⁹ Policy concerning homosexuality in the armed forces, Pub.L. 103-160, 10 U.S.C. § 654 (1993); *Uniform Discrimination: The “Don't Ask, Don't Tell” Policy of the U.S. Military*, HUMAN RIGHTS WATCH 7, (Jan. 2003), <https://www.hrw.org/reports/2003/usa0103/>.

⁵⁰ Human Rights Watch, *supra* note 49, at 12.

⁵¹ Policy concerning homosexuality in the armed forces, *supra* note 49, at (a)(15).

⁵² Human Rights Watch, *supra* note 49, at 4.

⁵³ *Log Cabin Republicans v. U.S.*, 716 F. Supp. 2d 884, 915 (C.D. Cal. 2010).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로렌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의 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의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continued...)

2010년에 미국 정부는 DADT 정책을 입법 및 사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미 하원은 투표를 통해 이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⁵⁴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도 이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⁵⁵ 그로부터 몇 달 후 연방 지방법원은 ‘로그 캐빈 공화당원들(Log Cabin Republicans)’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DADT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DADT 정책의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⁵⁶

이 재판부가 DADT 정책을 위헌이라고 본 이유는 그것이 동성애자 군인들의 “사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행동”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DADT 정책이 무엇보다도 동성애자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자신의 연인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DADT 정책이 군사대비태세나 군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는 등 미국 정부가 제기한 여러 주장들을 기각했습니다.⁵⁷

2010년 11월 30일에 미국방부는 DADT 정책의 폐지가 군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⁵⁸ 이 보고서에서는 수년 동안 별도의 제약없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온 호주와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한 후 부대의 단결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데는 개인 간의 유대가 아니라 부대의 사명에 대한 단합된 충성도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조사한 어느 국가도 동성애자 군인이 군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았습니다.⁵⁹ 미 의회 소속 입법기관인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도 캐나다와 이스라엘, 스웨덴을 조사하여 비슷한 결론을 얻었고, 군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군사대비태세나 효과성, 사기, 단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⁶⁰ DADT 정책은 2011년 9월 20일에 공식 폐지되었습니다.⁶¹

B. 영국과 독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자유 등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동성애금지법에 손을 들어준 *Bowers v. Hardwick*, 478 U.S. 186__ (1986)의 결정을 뒤집은 판결).

⁵⁴ Perry Bacon Jr. and Ed O’Keefe, *House votes to end ‘don’t ask, don’t tell’ policy*, WASHINGTON POST (May 28, 2010),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5/27/AR2010052704540.html>.

⁵⁵ *Id.*

⁵⁶ *Log Cabin*, 716 F. Supp. 2d at 929.

⁵⁷ *Id.* at 884, 923, 929 and 957.

⁵⁸ Bernard D. Rostker, Susan D. Hosek and Mary E. Vaiana, *Gays in the Military*, RAND CORP. (Spring 2011), <https://www.rand.org/pubs/periodicals/rand-review/issues/2011/spring/gays.html>.

⁵⁹ *Id.*

⁶⁰ Human Rights Watch, *supra* note 49, at 46.

⁶¹ *Repeal of “Don’t Ask, Don’t Tell” (DADT): Quick Reference Guide*, U.S. DEP’T OF DEF. (Oct. 28, 2011),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0/0610_dadt/Quick_Reference_Guide_Repeal_of_DADT_APPROVE D.pdf](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0/0610_dadt/Quick_Reference_Guide_Repeal_of_DADT_APPROVE_D.pdf).

(continued...)

2000년 이전까지 영국과 독일 국방부는 개인의 행동이나 복무경력에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군대 내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⁶² 영국에서는 동성애자의 군복무가 금지되었습니다.⁶³ 당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던 독일에서는 개인의 복무경력이나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LGBT 군인들은 행정적으로 제한되었고, 상관과 부하 간의 동성애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파면 사유가 되었습니다.⁶⁴

영국과 독일은 ‘러스티그-프레안 대 영국(*Lustig-Prean v. the United Kingdom*)’과 ‘스미스 및 그레이디 대 영국(*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이하 ‘러스티그-프레인’과 통칭하여 스미스의 건)’의 판결에 따라 2000년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이 두 판결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내린 것입니다.⁶⁵ 약 45 개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위 사건에서 영국 정부가 그러한 것처럼) 회원국 정부들에 법적 강제성을 갖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 (독일과 같은) 유럽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에 협약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제공합니다.⁶⁶ 영국은 1951년에 그리고 독일은 1952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스미스의 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조사한 후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군사 정책이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의했습니다. 사생활권에 대한 간섭은 “민주 사회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소요를 방지하고..... 보건 상의 목적이거나 사기 저하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⁶⁷ 유럽인권재판소는 원고의 성적 지향과 성적행위에 대한 이러한 조사가 “원고의 사생활권에 직접적으로 간섭”한다고 판결했습니다.⁶⁸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군대 내에 동성애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고 따라서 작전의 효과성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⁶² *The Legal Treatment of Homosexuals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OXFORD UNIV. PUBLIC INTEREST LAW SUBMISSION 1, (Sept. 10, 2003), <http://www2.law.ox.ac.uk/opbp/GaysinMilitaryFinal%20Submission.pdf>.

⁶³ Morris, Scott. *Europe Enters a New Millennium with Gays in the Military while the United States Drowns in Don't Ask, Don't Tell: Twin Decisions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M. U. J. GENDER SOC. POL'Y & L 9, no. 2, 424, 427 (2001).

⁶⁴ *The Legal Treatment of Homosexuals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supra* note 62, at 16-17; Jenny Gesley, *60 Year Anniversary of the German Compulsory Military Act*, LIBRARY OF CONGRESS (July 21, 2016), <https://blogs.loc.gov/law/2016/07/60-year-anniversary-of-the-german-compulsory-military-service-act/> (독일연방공화국의 징병제는 1956년 7월 2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존속되었다.)

⁶⁵ *The Legal Treatment of Homosexuals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supra* note 62, at 2.

⁶⁶ *Id.* at 2;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amended by Protocols Nos. 11 and 14*, art. 1 (Nov. 4 1950), ETS 5,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b04.html> [accessed 12 October 2018].

⁶⁷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upra* note 66, at art 8.

⁶⁸ *Smith v. United Kingdom*, 29 Eur. Ct. H.R. 493, 523 (2000); *Lustig-Prean v. United Kingdom*, 29 Eur. Ct. H.R. 548, 573 (2000).

(continued...)

사생활권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⁶⁹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부의 입장이 “동성애자에 대한 정형화된 적대감에서부터 동성애자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태도에만 근거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가 부대의 단결력을 저해하거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⁷⁰

1999년 9월 27일에 내려진 스미스의 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00년 1월 12일에 해당 정책을 폐지했습니다.⁷¹ 독일 정부는 2000년 12월에 관련 정책을 폐지했습니다.⁷²

C. 페루

페루 대법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적행위를 금지한 페루공화국 군사법전(Military Justice Code of the Republic of Peru) 제 269 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⁷³ 이 조항은 제 92 조의 6에 규정된 것과 비슷한 행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페루 군사법전 269 조는 첫 문단에서 “군사 시설 안팎에서 동성 간에 저속한 행동이나 기타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군인은 “장교의 경우 군에서 파면하고 사병의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⁷⁴ 이 조항의 두 번째 문단은 가중 요소로써 폭력이나 협박의 이용 또는 권력 남용 문제를 다루었습니다.⁷⁵

페루의 헌법재판소는 2004년 6월에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⁷⁶ 먼저, 헌법재판소는 페루의 헌법이 명시적으로 군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⁷⁷ 둘째, 헌법재판소는 269 조가 “저속한” 행동이 동성 간에 이루어질 때만 합당한 근거 없이 처벌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⁷⁸ 셋째, 헌법재판소는 269 조가 군사 시설 내에서 다른 유형의 성적행위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성적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성 원칙에

⁶⁹ 영국 정부는 동성애정책평가팀(Homosexuality Policy Assessment Team)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제출했다. 동성애정책평가팀은 국방부가 군의 동성애 관련 정책을 내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 국방부 공무원과 3군 대표의 소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Smith*, 29 Eur. Ct. H.R. at 514; *Lustig-Prean*, 29 Eur. Ct. H.R. at 564.

⁷⁰ *Smith*, 29 Eur. Ct. H.R. at 501, 524, 533-36; *Lustig-Prean*, 29 Eur. Ct. H.R. at 554, 574, 583-86.

⁷¹ The Legal Treatment of Homosexuals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supra* note 62, at 7 and 10.

⁷² The Legal Treatment of Homosexuals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supra* note 62, at 15-16.

⁷³ *Sentencia 0023-2003-AI/TC, Constitutional Tribunal of Peru (9 June 2004): Procedural Postur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June 9, 2004), <https://www.icj.org/sogicasebook/sentencia-0023-2003-aitc-constitutional-tribunal-of-peru-9-june-2004/>.

⁷⁴ *Id.*

⁷⁵ *Id.*

⁷⁶ *Id.*

⁷⁷ *Id.*

⁷⁸ *Id.*

(continued...)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⁷⁹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페루는 동성애자들도 평등권을 인정받으며 군복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⁸⁰

D. 에콰도르

1998년에 에콰도르 공화국은 “동성애 행위”를 한 장교를 “부도덕 행위 또는 전문성 결여”를 근거로 파면시키도록 한 군율(Rules of Military Discipline) 제 117 조⁸¹를 신설했습니다.⁸² 117 조는 성적 지향에 따라 군인들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제 92 조의 6 과 비슷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에 ‘플로르 프레이레 대 에콰도르(*Flor Freire v. Ecuador*)’의 건에 대한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2002년 8월 30일에 미주인권위원회는 군 내무반에서 동성애 행위를 함으로써 규율을 위반한 혐의로 퇴출된 에콰도르 군인 오메로 플로르 프레이레(Homero Flor Freire)와 관련한 소송을 접수했습니다.⁸³ 2013년 11월 4일에 위원회는 에콰도르 정부가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에콰도르는 1997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⁸⁴ 위원회는 에콰도르 정부가 (1) 플로르 프레이레에게 전면 보상을 제공하고 (2) 플로르 프레이레의 퇴출은 차별적이었음을 공식 인정하고 (3) 군 장교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수립하고 (4) 군과 군사 법정 관계자들에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주 협약과 에콰도르 국내법을 인지시키며 (5) 군법 절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이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⁸⁵

에콰도르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자 미주인권위원회는 플로르 프레이레의 사건을 미주인권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⁸⁶ 2016년 11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에콰도르의 군법 집행이 미주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⁸⁷ 재판소는 에콰도르의 군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성애 행위”를 차별적으로 대우했으며, 그에 따라 미주인권협약 제 1.1 조와 2 조 하에

⁷⁹ *Id.*

⁸⁰ *LGBT Rights in Peru*, EQUALDEX, <https://www.equaldex.com/region/peru>.

⁸¹ *CASO FLOR FREIRE VS. ECUADOR*, CORTE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Aug. 31, 2016), at pp. 19-20, http://www.corteidh.or.cr/docs/casos/articulos/seriec_315_esp.pdf.

⁸² *INTER-AMERICAN COURT: ECUADOR DISCRIMINATORILY DISCHARGED SOLDIER FOR SEXUAL ORIENTATION*, INT’L JUSTICE RES. CTR. (Nov. 14, 2016), <https://ijrcenter.org/2016/11/14/inter-american-court-ecuador-discriminatorily-discharged-soldier-for-sexual-orientation/>.

⁸³ *REPORT NO. 81/13*, ORG. OF AM. STATES (Nov. 4, 2013), at p. 1, <http://www.oas.org/en/iachr/decisions/court/12743FondoEn.pdf>.

⁸⁴ *Id.* at p. 43.

⁸⁵ *Id.*

⁸⁶ *INTER-AMERICAN COURT: ECUADOR DISCRIMINATORILY DISCHARGED SOLDIER FOR SEXUAL ORIENTATION*, *supra* 82.

⁸⁷ *Id.*

(continued...)

보장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⁸⁸ 미주인권재판소는 또 플로르 프레이레에 대한 처벌이 성격상 차별적이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함으로써 에콰도르의 군법이 미주인권협약 제 11 조에 보장된 플로르 프레이레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⁸⁹

그에 따라 제 117 조는 폐지되었고, 에콰도르 군대에서 동성애자 군인들도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⁹⁰

IV. 결론

제 92 조의 6 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휴먼라이츠워치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와 제 92 조의 6 과 유사한 법조항을 폐지한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의 다른 재판소들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군대 내에서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군법에서 LGBT 의 권리를 허용하고 보장하여 이들의 평등한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⁸⁸ CASO FLOR FREIRE VS. ECUADOR, *supra* 81, at p. 4.

⁸⁹ INTER-AMERICAN COURT: ECUADOR DISCRIMINATORILY DISCHARGED SOLDIER FOR SEXUAL ORIENTATION, *supra* 86.

⁹⁰ *LGBT Rights in Ecuador*, EQUALDEX, <https://www.equaldex.com/region/ecuador>.